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6월 8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0 호

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(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) ①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감사부서장에게 취업예정업체명, 취업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.

② 감사부서장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행동강령 제7조(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)제1항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

우 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3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

③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·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(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)을 제출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
	직 위 성 명	청 렬 감 사 팀 장 이 영 남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추 지 우 (3 8 0 - 5 8 1 5)

	<p>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(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)을 제출 받아야 한다.</p>	
--	---	--